

(問) 火災豫防을 위한 安全點檢 및 指導啓蒙에 努力하시는 貴協會에 감사드립니다 바 입니다. 本人은 綜合病院에 從事하는 管理責任者입니다. 當病院은 法上 特殊建築物에 屬하고 그 室內 內裝材는 不燃材料를 使用토록 되어 있으나 本建物は 可燃性의 材料로 內裝되어 있고, 이를 交替키 위하여는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法上 기존건물로서 內裝材를 交替치 않고 적절한 防火區劃을 함으로서 除外될 수 있는 規定이 있다는 데 이에 대한 상세한 解説을 부탁드립니다.

(答) 火災로부터 人命安全 및 財産保護에 항시 努力하시는 貴下께 眞心으로 감사하는 바 입니다. 不特定多數人이 出入하는 特殊建物과 5層이상의 高層建物は 罹災시에 豫想되는 많은 人命 및 財産上의 被害를 줄이기 위하여 그 室內 마감재를 不燃材料로 使用토록 建築法 및 同施行令에서 規制하고 있으며 그 對象建物を 다음과 같이 4가지로 大別할 수 있습니다.

첫째, 관람시설 등으로 객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 100㎡(내화구조의 건축물은 400㎡) 이상의 것. 의료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3층이상의 해당용도 거실의 면적 200㎡(내화구조의 건축물은 100㎡) 이상의 것.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으로 해당용도 거실의 면적 200㎡ 이상의 것.

둘째, 前項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을 지하층 또는 지하공작물안에 설치한 건물.

셋째, 자동차 관련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넷째, 5층이상의 건축물로서 5층이상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의 것.

위와같이 特殊建築物 등에 대한 內裝制限은 1978, 10, 30 公布된 現行 建築法 및 同施行令에 의한 것이고 同內裝制限의 最初規定時(1973, 9, 1 公布, 1974, 7, 1부터 施行)에는 上記 規制建物 中 일부(연립주택, 요양소, 예식장, 300㎡ 이상의 슈퍼마켓 또는점포, 여인숙, 하숙, 유흥음식점, 무도장, 공중목욕탕, 사격장, 스키트머신장, 보링

相談 코너

安全點檢

장, 당구장, 자동차운전교습장 등)가 除外되어 있었으며 同令부칙(1973, 9, 1)에서 本條項 시행당시 同條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1974, 7, 1이전의 기존건축물은 1978, 6, 30까지 同條의 規定에 적합하도록 경과조치가 있었으며, 또한 同令부칙(1978, 10, 30)에서는 78, 10, 30 이전의 기존건축물로서 위에서 기술한 最初規定시 除外된 건축물 즉 연립주택, 예식장, 사격장, 보링장 등은 1979, 12, 31 까지 同令規定에 적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그러면 貴下께서 질의하신 적절한 防火區劃으로서 內裝材의 制限을 받지 않아도 되는 方法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5層이하의 建築物로서 主要構造部가 耐火構造이고 그 居室의 바닥면적을 100㎡(자동식 소화설비 설치시는 3배 완화)이내마다 防火區劃할 시에는 建築年度에 상관없이 內裝制限을 받지 아니하며 둘째, 1974, 7, 1 이전의 기존건축물로서 10層이하의 部分에 대하여는 各層(地下層 포함)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내마다 방화구획함으로서 內裝制限을 받지 아니 한다고 同令부칙(73. 9. 1)에서 規定하였읍니다.

셋째, 11層이상의 部分은 建築年度 및 用途에 관계없이 5層이상의 建物로서의 內裝制限을 받고 있으므로 最小限 難燃材料이상의 內裝材를 使用하여야 하며 100㎡ (內裝材가 準不燃材이면 200㎡, 不燃材이면 500㎡) 이내마다 防火區劃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結論적으로 貴建物は 1974. 7. 1이전의 建築物일 경우에는 10層이하의 部分은 各層을 1,000㎡이내마다 防火區劃함으로서 內裝材를 交替치 않아도 되며 11層이상 層은 難燃材이상의 內裝材로 交替하고 100㎡ 또는 200㎡, 500㎡이내마다 防火區劃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貴病院이 耐火建築物로서 5層이하일 경우에는 建築年度에 관계없이 居室의 바닥면적 100㎡ 이내마다 防火區劃함으로서 內裝材의 制限을 받지 아니 합니다.

趙重達 <點檢二部代理>